

# 農地制度에 관한 憲法規定 改正案 檢討

## 1. 農地制度에 관한 憲法改正案

民正党 (案)	民主党 (案)	折衷案
農地の小作制度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禁止된다. 다만 農業의 生産性 提高와 農地の 合理的인 利用을 위하여 貸借 및 委託經營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認定된다.	農地の小作制度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禁止된다. 다만 不可避한 事情으로 發生되는 小作農地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適切한 措置를 한다.	農地の小作制度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禁止된다. 다만 (不可避한 事情으로 發生되는 貸借과 農地の 合理的인 利用과 生産性 提高를 爲한 委託經營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상속등 불가피한 사정

## 2. 日本, 台灣의 憲法規定

### ○ 日本

- 日本은 農地基本法의 農地法을 가지고 있으므로 農地制度에 관한 憲法規定은 없으나 農地法에 "農地는 耕作者 自身이 所有하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고 規定
- "耕作者의 農地取得을 促進시키고 그 權利를 保護해주며 農地의 效率的인 利用을 圖謀하기 위하여 利用關係를 調整"

### ○ 台灣

- 憲法: "國家는 土地의 分配와 整理에 있어서 自作農을 扶植함을 原則으로 하고 또한 適當한 經營面積을 規定하여야 한다."
- 土地法: 耕地의 貸借 및 그 權利保護를 規定
- 農業發展條例: "共同經營, 委託經營, 合作農場 및 其他經營方式에 의하여 經營規模를 擴大" 하도록 獎勵

### 3. 折衷案에 對한 意見

○ 貸貸借을 認定하는 경우를 "不可避한 事情" 이라고 表現하는 것은 그 限界가 模糊하여 尙后 下位法律制定時 그 解辭에 對한 論難予想.

- 法律用語로서 前提되는 例示가 "不可避한 事情" 이라고 規定하는 立法例가 드믄

- 同規定은 雜農이나 相續等을 前提로 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는바 만일 非農民이 相續이나 雜農과 같은 不可避한 경우가 아닌 方法으로 農地를 所有한 경우에는 過去와 같이 政府에서 強制로 買收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私有財産權保障에 對한 制約을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음.

○ 貸貸借에 關한 政策方向이 模糊함

- 農地 貸貸借은 東南亞 및 歐美諸國에서도 農地의 效率的인 利用 및 農業經營規模 擴大를 위하여 法的으로 권장하고 그 權利를 保護해주고 있음

- 만일 貸貸借을 促進하지 않을 경우 農業經營能力이 不足한 사람까지 農業에 從事하게 되어 營農規模가 零細化되고 農家所得도 低下되어 農村經濟의 어려움이 加重

- 陰性的인 貸貸借이 盛行하게 되어 貸借인의 權利가 法的으로 保護를 받지 못하는 結果가 됨

○ 貸貸借는 抑制하고 오히려 委託經營을 권장하는 듯한 表現은 外國의 立法例에서도 볼 수 없음

- 貸貸借를 積極 勸獎하고 委託經營을 制限的으로 許容하는 것이 農地의 生産性 提高를 위하여 바람직

○ 結論的으로 農地購入資金支援· 및 農地關聯稅制 改善, 農地賣買證明 發給制度 強化등을 通하여 점진적의 耕者有田을 實現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農業經營規模 拡大 및 農地의 效率的利用과 農業生産性 提高를 위하여 農地貸貸借를 法的으로 積極勸獎하고 委託經營은 補完的, 例外的으로 許容함이 바람직 함